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92 | 2025.07.14. (2025.07.07.~2025.07.13.)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국토교통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수도권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입니다.

【입법(행정)예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는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당해 연도의 월 보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세 소득정보를 보험료 산정·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 센터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

현행법의 배임죄 규정에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마련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6인)**」 ,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3인)**」 ,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등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의원 등 13인)**」 ,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운전자를 상시적인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주행자동차를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운행자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간소면허체계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등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식의의원 등 14인)**」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래형 선박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의 확산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는 등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국방위>, <행안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여가위> 등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3개 철도·도로 사업 예타 통과(국토교통부) 7
-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령 승인(금융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 10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문화체육관광부) 1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중소벤처기업부) 11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기획재정부) 12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행정안전부) 12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중소벤처기업부) 12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13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노동부) 13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3
-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14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15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6인) 16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의원 등 13인) 17
-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의원 등 11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2인) 17
-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의원 등 14인) 18
-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의원 등 10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의원 등 11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8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20
-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20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21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3인)	21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의원 등 13인)	22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의원 등 15인)	22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	22
•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	23
•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식의의원 등 14인)	23
•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4
•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허성무의원 등 10인)	24
•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의원 등 12인)	25
•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박상웅의원 등 10인)	25
•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26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6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7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28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1인)	2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	28
•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9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의원 등 12인)	30
•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30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위원회 일정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공정거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 중 유일하게 공정위로부터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
- [지적재산권] ‘AI 개발을 위한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 동향
- [기업지배구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과 그 법적 시사점
-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6. 25. - 2025. 7. 8.)
- [에너지·자원]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에너지 정책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3개 철도·도로 사업 예타 통과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 수도권 교통여건 개선·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도로·철도 대형사업 본격 추진	2025-07-10
-------	---	------------

국토교통부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다고 밝힘.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이 본격 추진되면 수도권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사업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서울 도심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김포 장기역에서 부천종합운동장역까지 21km(장기~검단~계양~대장~부천종합운동장)를 신설하고,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공용하여 서울 청량리까지 총 49km를 직결운행할 수 있게 하는 사업

* (사업구간) 경기도 김포시 장기 ~ 서울시 청량리(49km)
(사업규모/총사업비) 신설 21km, 공용 28km / 2조 6,710억(예비타당성조사 기준)

동 사업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으로 반영된 후, '23년 6월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경제성과 정책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

이 사업이 완료되면 인천광역시, 경기도 김포시 등 수도권 서북부에서 서울(청량리)까지 광역급행철도를 환승 없이 이용할 수 있어 김포~서울 구간 소요 시간이 약 20분에서 30분대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됨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건설사업은 부산·양산·울산 등 동남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하기 위해 부산 노포역에서 KTX 울산역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47.6km의 광역철도를 신설하는 사업

* (사업구간) 부산 노포역 ~ 울산 KTX 울산역
(사업규모/총사업비) 연장 47.6km, 경량전철 / 2조 5,475억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이 사업은 '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1~'30)에 반영된 이후, 지방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으로 선정('21.8)되었으며, 사업 구체화를 위한 사전타당성조사('23.6) 이후, '23년 6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여 사업추진을 확정('25.7)

이 사업이 완료되면 부산·양산·울산 지역을 1시간 생활권으로 연결이 가능하며, 부산도시철도, 정관선(예타중), 양산선(공사중), 울산도시철도(설계중) 등 인근 철도노선과 연계하여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더욱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 >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의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 구리시 퇴계원IC에서 성남시 판교JCT까지 31.5km 구간에 왕복 4~6차로 소형차전용 지하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

* (사업구간) 경기도 구리시(퇴계원IC) ~ 성남시 수정구(판교JCT) 31.5km 구간
(사업규모/총사업비) 왕복 4~6차로 지하고속도로 신설/4조 6,550억원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이 사업은 '18년 3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개선방안 및 '19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2030 계획에 이어 '22년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1~'25)에 중점사업으로 반영되었음. '23년 1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 이번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음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수도권 제1순환선 퇴계원IC~판교JCT 구간에 기존 고속도로 하부에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여 도로 용량을 확대함으로써,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인근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통행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

국토교통부는 타당성조사,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29년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힘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

-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의무적으로 적용되던 기업지배구조보고서가 내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해 확대되어 적용될 예정
- 신규 공시대상 기업의 원활한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기관에서 지역별 설명회, 1:1 컨설팅 등을 지원해나갈 예정

2025-07-09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안을 승인하였음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기업이 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토록 하는 제도로 '17년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처음 도입된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공시대상이 확대**되어 왔음

*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ESG기준원의 ESG 모범규준 등을 바탕으로 한국거래소에서 핵심원칙 10개를 선별(세부원칙 28개)

** 자산총액 기준 의무공시대상 코스피 상장사 단계적 확대('21.1월 기업공시제도 종합개선방안) : ('19년)2조원 이상 → ('22년)1조원이상 → ('24년)5천억원이상 → ('26년) 코스피 전 상장사

이번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공시 대상이 현재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541개사, '24년말 기준)에서 '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842개사, '24년말 기준)됨. 금번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에 따라 기업의 자율적인 지배구조 개선 노력 및 상장회사의 경영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

전체 코스피 상장사 확대에 대비하여 한국거래소와 상장회사협의회는 ❶사전 준비사항 안내, ❷1:1 컨설팅, ❸담당자 실무교육 및 임원교육, ❹지역별 설명회* 및 워크숍 실시 등의 노력을 계속하여 신규 의무공시법인이 원활하게 공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임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확대 시행의 안착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기업지배구조 관련 법령 개정사항 등을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가이드라인 및 중점점검사항 등에 반영하도록 하여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내실있게 운영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08 시행

청년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안입찰, 일괄입찰 또는 기술제안입찰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경쟁입찰을 하고 해당 입찰일부터 90일 이상이 지난 후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품목조정을 또는 지수조정률이 100분의 3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을 할 수 있는 자재의 가격증감률 요건을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5 이상인 때’에서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자재의 가격증감률이 100분의 10 이상인 때’로 완화하고, 입찰참가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도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같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08 시행
---------	--	---------------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행위 중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를 허가대상 행위에서 제외하고, 종전에는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물건의 적재 행위를 하려는 경우 모두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광고물 등의 설치·부착 또는 물건의 적재 행위 중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의 경우에만** 허가를 받도록 하여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중 궁능유적본부장 소관 문화유산 내의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궁능유적본부장에게 위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7-22 시행 예정

공공요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704호, 2025.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공공요금 지원의 기준 및 방법,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환경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5-07-07 시행

토양오염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 지역에 종전보다 엄격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적용하도록 변경된 지역과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넘을 가능성이 있는 외부 토양을 반입하여 성토재 등으로 사용한 지역을 추가하고, 최근 건설공사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오염토양을 공사 현장에서 정화하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관할 특별자치시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반출 정화 사유를 확대하는 한편,

반출·정화하려는 오염토양을 운반자에게 인계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오염토양 인수인계서의 일부를 추후 오염토양을 인계받아 처리하는 정화처리자가 대신 입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정화책임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2025.07.11. ~2025.07.25.

「관세법」제51조에 따라 외국물품이 덤핑가격으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덤핑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덤핑방지관세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중국 및 대만산 석유수지」의 경우 2024년 8월 2일부터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덤핑으로 인하여 동종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받았다는 무역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동 물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화: 044-215-8076\)](tel:044-215-8076)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7.07. ~2025.08.18.
-------	---------------------------------	-----------------------------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인한 소비 위축과 민생경제 침체 등의 비상경제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특례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공유재산정책과 \(전화: 044-205-3686, 팩스: 044-205-8967\)](tel:044-205-3686)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7.09. ~2025.08.18.
---------	----------------------------------	-----------------------------

당초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벤처기업법 시행령상 벤처기업 제한업종으로 지정되어 벤처기업 신규 신청 및 재확인 신청이 불가하였고 기존 벤처기업이 가상자산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을 취소할 수 있었으나, 최근의 디지털 자산 산업 전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등 정책 환경이 변화된 점을 반영하여 **가상자산 관련 업종을 벤처기업 제한업종에서 해제**하여 정책 일관성을 높이고 산업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전화: 044-204-7708, 팩스: 044-204-7709\)](tel:044-204-770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7.07.
~2025.08.18.

현행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당해 연도의 실 보수와 시차가 존재하고, 사업주는 국세 소득신고와 보수총액 신고를 이중으로 해야하는 부담이 있음. 이에 **고용·산재보험료 산정·부과 체계**를 당해 연도의 월 보수 중심으로 개편하고, 국세 소득정보를 보험료 산정·부과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주의 보험사무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7.07.
~2025.08.18.

고용보험은 제도 도입 당시부터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자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간 「고용보험법」상 적용대상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법상 적용대상임에도 가입누락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여전히 남아있음. 이에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득'(보수)로 개편하여 고용보험 실질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전화: 044-202-7358, 팩스: 044-202-8038)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5.07.09.
~2025.08.1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37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는 생활물류 쉼터가 종사자 휴식, 운송수단 정비 등 그 기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 쉼터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전화: 044-201-4156, 팩스: 044-201-560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5.07.10.
~2025.08.19.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정부가 식품 등의 생산부터 소비까지의 과정에서 발생 수 있는 위해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위해예측을 실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해예측 전담기관인 식품위해예측센터를 지정·지정 취소 및 지도·감독할 수 있는 내용으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제20827호, 2025.3.18. 공포, 2026.3.19. 시행)됨에 따라 **위해예측의 실시 및 시책 추진, 식품위해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014, 팩스: 043-719-200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25인)

2025-07-09 발의

자사주 취득은 회사가 보유 재산으로 출자금을 되돌려주는 ‘출자의 환급’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므로, 자본충실의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금지해 왔고, 예외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목적 등과 소각하기 위한 경우에만 허용했으나, 2011년 이명박 정부는 경영권 방어라는 재계의 요구와 글로벌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회사법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소각 의무를 폐지했음

하지만 이러한 제도 변경이 실제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함. 예를 들어, 미국의 모범회사법이나 이를 따르는 캘리포니아 회사법에서는 자사주를 ‘발행되지 않은 주식’으로 간주하여 사실상 소각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자사주 보유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음. 따라서 자사주의 소각 의무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반한다는 주장은 반드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또한, 국제적으로는 자사주에 대해 의결권과 배당권, 신주배정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준임.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해 신주배정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지주회사로의 전환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부당하게 확대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이 발생하고 있음. 자사주가 지배구조 왜곡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임. 특히 자사주를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우호세력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례도 적지 않음

실제로 자사주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상장사는 216개에 달하며, 40%를 넘는 기업도 4곳이나 존재하는 등 자사주가 과도하게 축적·남용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5% 이상 보유할 경우 자사주 보유 현황과 목적, 향후 처리계획(예: 추가 취득 또는 소각 등)을 명시한 보고서를 이사회 승인 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음. 또한, 모든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처분할 경우에는 처분 목적과 상대방, 선정 사유, 주식가치 희석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규제를 강화했음. 그럼에도 자사주 남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음

한편 자사주를 소각하면 회사의 주식 수가 줄어들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하고,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는 배당과 유사한 주주환원 효과를 가져옴. 이에 따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요구하는 시장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역시 대선 후보 시절 자사주 소각의 제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직원 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보유를 허용하되, 이 경우 반드시 직후 정기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때 대주주의 의결권은 발행주식 총수의 3%로 제한함으로써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자사주를 통한 주주환원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안 제542조의14 신설)

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의원 등 11인)

2025-07-10 발의

현행법 제355조 제2항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를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규정함

이로 인해 배임의 고의 없는 법인의 이사 등이 업무상 판단(소위 “경영판단”)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까지 배임죄로 의율되면서, 선의의 피고인을 양산한다는 비판이 학계와 실무에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상법」에 명문화되면서, 주주 권익의 강화와 함께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진 상황임

미국과 독일의 경우, 과도한 책임추궁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미국은 주마다 판례를 통해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독일은 개별법인 주식법에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배임죄 규정에 이사 등 임원이 합리적으로 경영상의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하고 주주 권익 강화와의 제도적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355조제3항 신설)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의원 등 16인)

2025-07-07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로 하여금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동통신 서비스에서 필수적 정보인 범용 가입자식별모듈에 연계된 정보의 경우 암호화 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가입자식별모듈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를 침해 피해로부터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함

이에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 의무화 대상에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적인 개인정보를 규정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9조)

정무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3인)

2025-07-09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유출된 항목, 시점, 대응 조치 등 법정사항을 정보주체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 홈페이지 공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유출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홈페이지 공지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은 정보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게 하고,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 개인정보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경우로서 유출이 된 개인정보의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출이 확인되었거나 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법정 통지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것을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있는 대응을 유도하려는 것임 (안 제34조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1인)

2025-07-09 발의

인증은 제품이나 시설, 서비스 등이 일정한 평가기준에 적합한지 평가하여 그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인하는 제도로, 제품 등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함

정부에서는 그간 유사·중복된 인증 통합,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 등의 방식으로 인증을 정비해 왔으나, 인증의 증가로 인한 기업부담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증 총량제를 도입하여 신설 인증의 심의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규제개혁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설할 수 있는 인증의 총량을 정하여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의 불필요한 신설을 방지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4 및 제2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2인)

2025-07-11 발의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 등으로 하여금 각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가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기업공시제도의 목적은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기업 정보를 공시하여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 그 항목에는 임원이나 보수총액 상위 5명의 보수 및 산정기준 등도 포함하여 기업 보수체계 등의 건전성, 기업 경쟁력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성별격차가 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로 성별격차가 고착화된 상황이며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공시 제도를 통하여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시항목에 성별 임금 현황 등 성별격차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구조적 성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노동환경 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돕고자 하는 것임 (안 제159조제2항, 제160조제1항)

정무위원회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2025-07-11 발의

현행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총 매출액을 기준으로 책정되며, 여기에 부가가치세 외에도 유류세·교육세 등 각종 간접세가 포함되어 실질 이익과 무관하게 과도한 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유류세 비중이 60%에 달하는 주유소 업종의 경우 영세 가맹점임에도 우대수수료 적용에서 배제되고, 실제 수익률보다 수수료 부담이 높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규모의 판단 기준인 매출액에서 국세, 지방세, 부담금 등을 제외하도록 하여 실질 수익 기반의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마련하고, 정부 세입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부담하는 근거를 마련하며, 가맹점 단체와의 수수료 협의를 규정하는 등 영세 사업자 보호 및 소비자 부담 완화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8조의2 등)

기획재정위원회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2025-07-07 발의

현행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합성 니코틴 액상을 원료로 한 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판매업 등록이나 소매인 지정 없이도 무인 판매점의 개설이 가능하고, 전자거래가 가능함. 이로 인해 무인 매장이나 온라인 판매 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 인증 등 우회 수단을 통해 청소년의 접근이 이루어지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 전체 및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것으로 확대함으로써 합성 니코틴 제품을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하여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1인)

2025-07-07 발의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8인)

2025-07-09 발의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을 목적으로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자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보호무역주의로 공급망의 분절화와 블록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출지원기관인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무역보험기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해당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을 추가하고, 해당 규정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수출 중소기업에 포함한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안 제8조의3)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2인)

2025-07-09 발의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준공 후에도 미분양(악성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주택이 상당수 적체되어 지역경제와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비수도권 악성 미분양)은 2025년 5월 기준 22,397호로 2013년 6월 이후 11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이며, 2024년 5월 10,806호에 비해 1년 사이 2배 이상 급증(11,591호, 약 107% 증가)해 비수도권 악성 미분양 해소가 더욱 시급해진 상황임

한편, 현행법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비수도권 지역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의 악성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후 이를 취득하기 전에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일정 기간 1세대 1주택 특례(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간주)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과세특례를 시행 중임

그러나 여전히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해소가 더딘 상황이며, 지역 주택시장 안정 및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세특례 적용기한의 추가 연장이 필요함. 또한, 비수도권 지역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이 상당히 공급되고 있으며 최근 건설원가 상승으로 분양가 상승으로 현행 6억 원 이하 주택 적용대상도 적어지고 있음

이에 적용기한을 2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하고,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의 요건도 취득가액 9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면적 등으로 개정하여,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와 주택시장 경기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 부담 또한 완화하고자 함 (안 제98조의9)

국방위원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2025-07-08 발의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선임 또는 채용은 국제 협력과 전문성 확보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으나 전략적 기술을 보유한 산업에 대한 외부의 접근성이 높아져 국가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음

이에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인적 요소에 내재된 국가안보상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장치를 마련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의3 신설)

국방위원회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의원 등 12인)

2025-07-08 발의

최근 방위산업 수출 확대와 국제 공동개발 사업 참여 등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국내 방위산업체가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 또는 직원으로 선임하거나 채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변화는 방산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동시에 국가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의 외부 유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위험 요인을 수반함

현행법은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방지를 위한 기본적 보호체계를 정하고 있으나,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의 방위산업기술 접근에 대한 선제적 위험 식별 및 통제장치는 구체화 되어 있지 아니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방위산업체의 경영이나 운영에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방위산업기술에 포함된 기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고, 방위산업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비한 관리 계획의 수립 및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기술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고, 글로벌 인재 활용과 방위산업기술보호 간의 균형 있는 보호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3조의3 및 제13조의4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3인)

2025-07-07 발의

현행법상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라 함)를 포함한 모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거짓 표시된 전화번호의 전화 및 문자메시지의 발신 차단 등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가 부여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각종 금융사기 범죄를 유발하는 문자메시지의 유통이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동통신사업자의 의무이행을 제고·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로 이용자에게 불법문자정보가 유통되는 것을 탐지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업무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 부처 및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불법문자정보의 유통 방지 등에 필요한 시책에 반영하게 하려는 것임 (안 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32조의20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3인)

2025-07-09 발의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침해사고의 대응·신고·원인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침해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알려야 된다는 규정이 부재하며,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조치 규정이 없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침해사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자료 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등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2제7항, 제48조의3제4항 및 제48조의7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희의원 등 15인)

2025-07-10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의 이용자에게 침해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은 두지 않음

최근 SK텔레콤의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침해사고의 위험성과 2차 피해 가능성에 대한 통지가 적시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여 이용자 보호 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이에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여 이용자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3제4항 신설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2025-07-10 발의

현행법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 등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탁월한 업적이 있는 핵심 이공계인력 등 우수한 이공계인력의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핵심 이공계인력이 탁월한 업적으로 국가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해외 연구활동 등으로 출입국 시 심사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의 원활한 연구활동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출입국 심사에 있어 핵심 이공계인력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핵심 이공계인력이 연구활동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5인)

2025-07-07 발의

최근 K-콘텐츠가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함에 따라,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현재 문화 관련 법률에는 문화산업 및 콘텐츠산업의 진흥의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활성화에 대한 지원은 개별 시설이나 사업 단위로 분산되어 있어 시너지 창출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기 위해서는 창작, 기술, 인력, 금융, 해외 진출 지원 기능이 유기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복합거점을 조성하여 공연·관광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K-컬처 복합거점지구 및 K-콘텐츠 공연복합구역을 지정하고 통합기반시설 구축과 연계하여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창작·유통·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17조의2 신설)

행정안전위원회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별법안(이상식의원 등 14인)

2025-07-08 발의

자동차에 탑재된 인식장치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주행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미래 모빌리티 혁신의 중심축으로 작용하며 세계 각국은 2030년대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와 자율주행기술 선점을 목표로 주행 기술개발과 서비스 실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대비하여 도로교통운영, 면허제도 등 도로교통체계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하여 운전자를 상시적인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주행 자동차를 그 목적에 맞게 운행하는 운행자의 개념으로 대체하고, 간소면허체계인 자율주행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한편, 경찰청장이 자율주행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교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주행기술 상용화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회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2025-07-09 발의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2025-07-07 발의

국제사회가 해양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조선산업은 탄소중립 전환이라는 새로운 산업 질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수요 확대와 자율운항 등 첨단기술이 적용된 선박 개발, 생산 공정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

조선산업은 기존의 노동집약적 제조산업에서 고도기술 기반의 시스템산업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준비가 시급한 상황임.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분야에서 기술적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중국, EU 등 주요국들이 국가 차원의 집중 투자와 전략적 육성을 통해 미래 조선시장의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는 상황임

이에 미래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미래형 선박의 실증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생태계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우리 조선산업이 미래 시장에서 기술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등 12인)

2025-07-07 발의

국내 수소차 누적 등록 대수는 2018년 9백여 대에서 2025년 4월 말 3만 9천여 대로 늘어났고, 연내 5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됨. 특히 최근에는 수소버스가 광역·시내버스 노선에 도입되어 2024년 말 기준 1천 6백여 대 보급되었고, 정부는 2030년까지 2만여 대 이상 보급할 예정으로 수소는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에너지원이 되었음. 그러나 지난 2022년 화물차 파업 여파로 일부 충전소가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고, 2023년과 2025년에는 수소 출하 설비 고장, 생산 시설 정전 여파로 공급량이 줄어 수급 불안이 생기는 등 공급 체계가 불안정한 상황임

전력, 원유, 가스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법에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소 에너지는 비상시 대책이 부재함. 그러나 수소는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원으로서 앞으로 수송용을 넘어 산업용, 발전용, 가정용으로 용도가 더욱 확대되어 2050년에는 우리나라 총 발전량의 23.8%, 최종 에너지 소비의 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대중교통 수소버스 보급으로 인한 공공성뿐만 아니라 앞으로 총 발전량에서 수소가 차지하는 비중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우리나라의 주요한 에너지원으로서 정부의 비상시 에너지 수급계획에 수소를 포함하여 수소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고자 함 (안 제2조제2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박상웅의원 등 10인)

2025-07-08 발의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세계 5위에 달하는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그 생산액은 2013년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7.3%를 차지하는 등 국가기간산업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석유화학산업은 집적 이익이나 시너지 효과를 감안해 입지적 특성이 좋은 지역에 기업체가 집약되는 경향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서산, 울산, 여수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석유화학단지가 조성되어 국내에서 제조되는 대부분의 석유화학 원료와 중간재를 생산하고 있음

이에 따라 석유화학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석유누출 등 크고 작은 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그 주변지역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재산에 지속적으로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으로 이로 인해 석유화학단지 인근 지역에 많은 사회적 갈등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특정지역이 수인함으로써 달성되는 사회 전체의 편익을 고려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책을 신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석유화학산업의 원활한 발전을 위하여 석유화학단지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주변지역의 주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의원 등 12인)

2025-07-09 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촉발한 이래 국제유가 및 전기요금 상승으로 양식업자는 지속적인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임

한편, 지난해 한국전력공사가 실시한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은 한국전력공사의 재정 적자 해결 방안으로 농사용 전기요금의 중장기적인 인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농사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상당수의 양식업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데,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순히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에너지 부담을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양식업자가 신에너지 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식업자의 에너지요금 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수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61조의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025-07-08 발의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고용환경 변화와 노동시장 구조 재편이 가속화됨에 따라 일자리 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고용기반 확보가 정책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음

현행법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수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유공자에 대한 발굴·지원의 구체적 근거가 미비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존재함. 현재 ‘일자리 으뜸기업’ 등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나, 관련 근거가 「고용정책 기본법」상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도의 지속성과 지원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정책 시책에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 및 유공자 포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정책의 방향성과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이를 통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일자리 질 향상 및 고용안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려는 것임 **(제6조제1항)**

환경노동위원회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5인)

2025-07-08 발의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은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음·진동 유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피해 발생 지역과 소음·진동 발생 지역이 다른 경우, 피해지역 관할 지자체장이 소음·진동 유발자에게 조치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신속한 피해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음. 특히 대규모 공사장, 산업시설 등으로 인한 생활소음·진동 피해가 광역적·초지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현행 제도는 관할 권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대응이 어려운 구조에 머물고 있음

이로 인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장기화되고, 지자체 간 협력 부재로 책임 공백이 발생하는 실정임. 발생지 지자체의 소극적 대응, 행정 절차의 지연 등으로 저감조치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있으며, 생활환경 보호라는 법령의 본래 목적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피해지역 지자체장이 발생지 지자체장에게 조치명령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권고를 받은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을 명시함으로써,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저감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지자체 간 협력과 책임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제23조 제5항 및 제6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등 10인)

2025-07-08 발의

현행법은 생활·공업·농업·환경개선·발전 등의 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하고, 시·도지사는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천수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 공업용수 확보가 시급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등이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따른 시·도지사 및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외에 발전용 댐을 소유한 발전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경우에도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는 공업용으로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천수 사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9항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

2025-07-11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에 대해서 고용관리의 개선, 근로자의 고용안정 촉진 및 고용평등의 증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매년 실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은 64.7%(2020년), 64.6%(2021), 65.0%(2022), 65.3%(2023)이며(e-나라지표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기준), 주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공시제도를 통하여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의 고용형태 공시 사항에 남녀 근로자의 성비와 직급·직무 현황, 육아휴직 사용 현황, 성별 승진 현황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성별 임금격차 해소와 고용평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안 제15조의6)

국토교통위원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등 11인)

2025-07-07 발의

현행법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권으로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대도시권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형성됨에 따라 도시의 공간이 단절되고, 특히 마산·창원·진해 지역의 통합을 가로막는 등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허용행위를 열거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스마트농업, 민영도시농업농장 등 시설의 설치나 산림자원 육성에 필요한 행위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부여하면서,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미만(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의 개발제한구역 등에 대해서는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다만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협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 등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 한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서 도시의 확산가능성이 상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해제 결정을 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유지 여부를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 처리 시 국토교통부장관과의 사전협의 제도를 비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폐지함으로써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여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2025-07-07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 산정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별도로 부과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적정 공사비 산정기준이 있더라도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고, 최근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에 어려움을 겪거나 과소한 공사비 산정이 빈번하여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의무를 법률에 명시하여 적정 공사비 지급과 관련한 최소한의 책무를 규정하고, 공사비 증액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안 제45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등 12인)

2025-07-09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국방·문화유산·야생생물 등 관련 구역에서는 토지취득계약 전에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외국인은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절차를 제외하면 자금조달 등에 있어 특별한 제한 없이 주택 취득이 가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거래가 성행하므로 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해외사례처럼 비거주 주택 취득 제한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외국인등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준공인가·사용승인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에서 실거주하는 경우에만 주택취득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시정권고, 처분명령 등을 규정함으로써 외국인등에 의한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9조의2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8인)

2025-07-11 발의

현행법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관할 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아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계획에 대해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을 위해 시공사를 선정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공사와 당초 체결한 공사비 보다 크게 인상된 공사비로 인하여 주택조합과 시공사 간에 공사비 증액의 적정성에 대해 갈등을 빚고 있음. 일례로 대구의 한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635명으로 아파트 840세대, 오피스텔 165호를 건립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공사는 당초 기존 공사비보다 30% 많은 공사비를 지역주택조합에 증액을 요구하였고, 중도금 대출 이자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 사업구역 내에 건물 등 매입비용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등 조합원의 부담금이 2배로 증가하면서 조합원의 부담 뿐만 아니라 공사비 증액에 대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역주택조합 등 주택조합이 일정 비율 이상의 공사비가 증액되거나, 일정 수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정비사업 지원기구인 전문기관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사비 증액 관련 주택조합과 시공사간의 분쟁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주택조합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14조의5 신설)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위원회 일정

구분		일시	내용
법사위	전체회의	7/16(수) 10:00	-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정성호) 인사청문회
정무위	전체회의	7/15(화) 10:00	- 국무위원후보자(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인사청문회
기재위	전체회의	7/15(화) 10:00	-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7/17(목) 10:00	- 국무위원후보자(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인사청문회
교육위	전체회의	7/16(수) 10:00	- 국무위원후보자(교육부장관 이진숙) 인사청문회
과방위	전체회의	7/14(월) 10:00	- 국무위원후보자(과기정통부장관 배경훈) 인사청문회
외통위	전체회의	7/14(월) 10:00	- 국무위원후보자(통일부장관 정동영)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7/17(목) 10:00	- 국무위원후보자(외교부장관 조현) 인사청문회
국방위	전체회의	7/15(화) 10:00	-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안규백) 인사청문회
행안위	전체회의	7/18(금) 10:00	- 국무위원후보자(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인사청문회
농해수위	전체회의	7/14(월) 10:00	- 국무위원후보자(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 인사청문회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7/15(화) 10:00	- 국무위원후보자(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7/17(목) 10:00	- 국무위원후보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인사청문회
복지위	전체회의	7/18(금) 10:00	-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인사청문회
환노위	전체회의	7/15(화) 10:00	-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성한) 인사청문회
	전체회의	7/16(수) 10:00	- 국무위원후보자(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인사청문회
여가위	전체회의	7/14(월) 10:00	- 국무위원후보자(여성가족부장관 강선우) 인사청문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7/14(월) 07:30	[한미의원연맹 제1차 세미나] 미국 의회에 대한 이해 및 한미 의회 교류 전략	정동영·조경태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7/15(화) 08:00	(새정부 국정동력 불입!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주식편	김태년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15(화) 09:30	새 정부 노동정책 무엇을 해야할까? : 노동기본권 확대와 불평등 해소 방향 및 과제	김주영·김태선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5(화) 09:30	철도산업구조개혁 넘어 모달시프트로 : 국회토론회	윤종오·한준호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의실
	7/15(화) 10:00	커지는 중고거래시장, 세계 경쟁을 위한 활성화 방안 : 중고시장 활성화 세미나	이인선·허종식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7/16(수) 14:00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 국가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방안	한민수·최형두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7/16(수) 16:00	중소기업 산업 AI 확산 방안 토론회	권칠승·서일준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7/17(목) 10:00	의료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	이주영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7(목) 14:00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ESG 경영 대응 전략 : 경제포럼 세미나	권칠승·홍기원 의원실 등	의원회관 3세미나실
	7/18(금) 14:00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방안	박수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자료집 등 자료집	7/15(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76호(2025-13호) 발간	국회도서관	
	7/15(화)	「금주의 Book Review」제2025-3호(제3호) 발간		
	7/16(수)	「World&Law」(2025-7호) 발간		
	7/16(수)	「Data&Law」제32호(2025-7호) 발간		
	7/16(수)	「금주의 서평」제737호(2025-28호) 발간		
	7/15(화)	「NABO Focus」제118호 발간	국회예산정책처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91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7/7(월)	「Data+」제13호(2025-13호)	국회도서관	
	7/8(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75호(2025-12호)		
	7/9(수)	「금주의 서평」제736호(2025-27호)		
	7/8(화)	「NABO Focus」제116호	국회예산정책처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7/7(월)	공정거래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하여 피심인 중 유일하게 공정위로부터 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받은 사례
7/10(목)	지적재산권	‘AI 개발을 위한 저작물 학습과 공정이용’에 관한 최근 미국 판례 동향
7/10(목)	기업지배구조	이사의 충실의무에 관한 상법 개정과 그 법적 시사점
7/11(금)	금융	세종 Financial Regulation Review (2025. 6. 25. - 2025. 7. 8.)
7/11(금)	에너지·자원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에너지 정책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